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1406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1. 26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한동욱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15. 6. 2. 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5. 10. 10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윤보선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4.06.26.	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4.6.26.~2 026.6.26.	50,000,000		2024.6.26.	2025.5.23.	2025.9.1.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'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' 소재지번에 1.인천직할시 북구 병방동 381 로 등재되어 있으나, 현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임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1406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81

아주아파트

3동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27번길 15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

아파트

1층 856.80㎡

2층 856.80㎡

3층 856.80㎡

4층 856.80㎡

5층 856.80㎡

6층 856.80㎡

지하 414.5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4층415호

철근콘크리트조

48.1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직할시 북구 병방동 381

대 14843.4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4,843.4분의 31.18

감정평가액

184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1.05

184,000,000

18,400,000

2회

2026.02.06

128,800,000

12,880,000

3회

2026.03.23

90,160,000

9,016,000

4회

2026.04.22

63,112,000

6,311,200

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'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' 소재지번에 1.인천직할시 북구 병방동 381 로 등재 되어 있으나, 현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임
